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534
----------	-----

2024. 10. 21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0. 10. / 정현미 의원 등 7명
나. 회부일자 : 2024. 10. 10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10. 2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7조2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정의를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근거 규정 마련(안 제1조)
- 지역서점의 정의를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(안 제2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(안 제3조)

- 불필요한 조항 삭제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조공선)

- 본 안건은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의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,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,
 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 및 형식·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